

## 경상남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기관<br>(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선발예정<br>인원 | 주요직무   |
|-----------------|-----------|---------------|------------|--|
| 고성군<br>(농업기술센터) | 농기계<br>수리 | 지방전문경력관<br>다군 |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기계 순회 수리</li><li>• 농기계관련 농민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li><li>• 방역방제기 등 임대농기계 및 차량 관리</li><li>• 농기계 임대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li></ul> |

### 2. 응시 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 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근무예정기관<br>(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
| 고성군<br>(농업기술센터) | 농기계<br>수리 | 지방<br>전문경력관<br>다군 | <p>1.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 종류 :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p> <p>* 관련 직무 분야 :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 관련 분야</p> |

- ※ 관련 직무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884호, 2020. 1. 29.)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9772호, 2019. 5. 21.)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52호, 2021. 2. 16.)

## 4. 보수 및 복무

### ○ 보 수

- 봉 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봉급액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기관에서 결정)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 ○ 정 년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거 60세

## 5. 시험 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6. 시험 일정

| 공 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일자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
| '21. 3. 29.(월) | '21. 4. 9.(금) ~ 4. 13.(화)<br>※기간 중 업무시간 내<br>(09:00~18:00) | '21. 5. 3.(월) | '21. 5. 10.(월)<br>또는<br>'21. 5. 11.(화) | '21. 5. 18.(화)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 게시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나.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접수 대신 등기우편 접수 당부

##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8.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실시
  -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 9.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수입증지(우편접수 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 금액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8급·9급 상당) : 5,000원
  - 판매처 : NH농협은행 경남도청출장소(☎055-283-2901, 도청 본관1층)
  - 유의사항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 ②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

## ③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④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원본)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http://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 발급요령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가능(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용)

##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0.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상·중·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
|----------|---|---------------------------------|
| 평정<br>요소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br>•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br>•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br>•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불합격 처리기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 11.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사.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원칙(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아.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24)로 문의하시기 바람

## 12.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다.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화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C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고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4)
- 라.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  |
|----------------------|--|
| <b>확진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li> </ul>   |
| <b>의사환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li> </ul>  |
| <b>조사대상<br/>유증상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li> <li>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li> <li>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li> </ul>                           |
| <b>감염병<br/>의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li> <li>「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li> <li>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li> </ul> <p>※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1. 1. 1. 시행)</p> |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